

# 고 발 장

고 발 인 : 1.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공동대표 임 종 대  
(담당 : 이상민, 참여연대 간사 )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현  
(담당 : 송호창, 민변 사무차장 )

피고발인 : 1. 성명불상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본부 임직원  
2. 성명불상 삼성에스디아이 전략기획팀 임직원  
3. 성명불상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직원

고발대상 범죄 :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형법 제133조 제1항)

##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들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본부, 삼성에스디아이 전략기획팀 및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각 임직원들로서,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으로 촉발된 서울중앙지검, 검찰 특별수사본부 및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삼성그룹의 대주주· 임원들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미리 조직적으로 인멸, 은닉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들입니다.

## 2. 그간의 경위

- 가. 2007년 10월 29일 시사인, 한겨레신문 등은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가 진술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등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최초로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11월 5일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제기동 성당에서 직접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같은 달 6일 고발인들은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등을 특경가법(배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 나. 2007년 11월 19일 검찰은 삼성 비자금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감찰본부장에 박한철 지검장을 선임하였고, 위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증권과 삼성 SDS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어 2007년 12월 10일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조준웅 특별검사가 선임되었고, 위 특별검사팀은 이건희 등 주요 인사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 3. 피고발인의 범죄사실

- 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검사에 의하여 삼성 계열사 및 이건희 등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언론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바로는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은폐로 압수수색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본관 27층 비밀금고는, 삼성그룹의 김인주 사장도 2003년 검찰조사에서 시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나머지 결정적인 증거자료들 또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언론과 사회 각 계층에서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 이후 상당기간이 흐른 시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따라서 그 사이에 삼성그룹 측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나.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검찰 및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여 미리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 우선 2008년 1월 16자 한겨레신문은 삼성전자 등의 증거인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첨부자료 1.).

삼성전자는 이달 초 본사 주관으로 모든 사업장에 ‘보안 지침’을 내려 보내 자료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경영지원 부문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보안 지침은 △2001년 이전 작성 문서 △시민단체·관청·구조조정본부·자회사·관계사 관련 자료 △구조본이 실시한 경영진단 문서 등을 모두 폐기하라고 돼 있다. 지침에는 ‘개인 통장은 회사에 두지 말고, 공무원한테서 받은 명함은 즉시 폐기하라’, ‘임원은 부장을, 부장은 차·과장을 점검해 실행 여부를 보고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삼성전자는 또 특검이 14일 첫 압수수색에 나서기 사흘 전부터 특별 보안 점검을 벌여 그룹과 관련한 자료들을 대량 파기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한 간부는 “금요일인 지난 11일 저녁 ‘일요일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테니 모두 출근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다. 사무직 전원이 출근해 이견희·이재용·이학수 등의 이름이 들어간 문건들은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없앴고, 2005년 이전 작성된 피시 자료들도 대부분 지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사업장은 14일에도 직원들을 소집해 명함철, 과거 근무 수첩, 각종 대외비 문서들을 파쇄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위 신문에서는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의 경우 2007년 11월부터 일주일 또는 보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컴퓨터와 책상 서랍을 점검하면서 자료 삭제 및 불필요한 자료의 분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즉 삼성그룹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단순한 추측성 보도가 아니라, 이제는 신빙성 있는 사실에 기초한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인멸이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삼성계열사에서도 조직적으로 시도되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2008년 1월 22일 한겨레신문은 삼성에스디아이의 증거인멸 시도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첨부자료 2).

1월 11일 경기 수원시 삼성에스디아이 본사 한 부서에서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특검 대비 교육’에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는 방송이나 파트장의 통보가 있으면 우선 작업 종이거나 책상 위에 놓은 모든 문서자료를 챙겨 몸이 지니고 가능한 빨리 사무실을 벗어나라”고 개인별 행동지침 교육을 하였다.

또한 위 교육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싱글(삼성 사내 네트워크)에 남아 있는 기결, 상신타 등의 문서를 지우는 것이고 지금 즉시 처리해야 한다”, “필수문서만 넷디스크로 옮긴 뒤 메모, 일정관리, 명함,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자기 컴퓨터를 무조건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교육했다. 이에 따라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교육한 내용을 실행한 뒤 각 팀장의 허가를 받고 퇴근해야 했다.

이어 위 신문에서는 사내 인트라넷망을 통해 모든 사원에게 “보유 중인 모든 문서를 ‘넷디스크’로 옮겨 저장하라, 개인용 PC 자료를 삭제하라”는 문서로 된 지침도 공개하였습니다(첨부자료 3).

라. 삼성그룹이 회사차원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경우는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선 1998년 11월 삼성자동차 직원들은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던 공정위 조사관으로부터 증거자료를 빼앗아 파기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재벌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조사를 할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는 계열사에 ‘공정거래 조사 관련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제목의 지침을 통하여,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폐기하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00년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당시에서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는 자료은폐 등을 문건으로 지시하였고(위 문건은 2001년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e삼성 등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사실이 적발되지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2005년 9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삼성전자가 작성한 “공정위 조사대비용령지침” 문건까지 공개하였는데, 위 지침에서는 그룹 전산망인 싱글을 가동중지하고 조직도, 전화번호부, 부서별 업무 분장표를 없애도록 지시하였고, 여직원 수첩을 비롯한 전 직원의 비망록은 반드시 폐기 또는 치우도록 하였으며, 전 직원들의 컴퓨터를 점검해 ‘휴지통 비우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첨부자료 4).

라. 따라서 2008년 1월 16일자 및 1월 22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차원의 위와 같은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를 볼 때, 매우 신빙성이 높습니다. 즉 과거 삼성그룹은 주로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였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검찰 및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것입니다. 더구나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삼성그룹은 과거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 있고, 삼성비자금의혹관련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에서도 위 증거인멸 의혹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1월 16일자 한겨레신문 보도는 객관적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증거인멸 시도가 삼성전자,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 여러 삼성계열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 사이 피고발인들은 검찰 또는 특검의 수사에 직면하여 자신 또는 삼성그룹의 대주주·임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 은닉하거나 이를 교사한 것입니다.

#### 4. 위법성

##### 가. 관련 규정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판례의 태도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위 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별개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그리고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 행위시에 수사 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물론,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대법원 1982.4.27.선고 82도274 판결), 다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

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 다. 본 사건의 경우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최초로 언론에 보도된 시점은 2007년 10월 29일이고, 고발인들이 고발장을 접수한 시점은 2007년 11월 6일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개시된 2007년 11월 6일은 물론, 최소한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언론에 보도된 2007년 10월 29일 이후에 피고발인들이 관련 증거 자료를 은폐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삼성전자, 삼성에스디아이,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모두 그 이후에 시도된 것이어서, 시점을 볼 때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발인들의 증거인멸은 '지침' 형태로, 또한 직원들을 모아놓은 교육 방법으로 이루어졌는 바,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영업활동의 일환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의사로 진행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 및 고발인들의 고발장에서 적시한 삼성그룹의 위법행위는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물론, 뇌물공여, 배임증재,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위법행위, 분식회계, 증거인멸교사,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다양한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지침 또는 직원 교육에서 폐기를 명한 관계사 자료나 구조본이 실시한 경영진단 문서, 개인통장 및 수첩, 대외비 등은 위 고발사실을 수사하는데 매우 유의미한 문서들이어서, 대상문서의 종류 측면에서도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들의 문서 폐기 등을 지시한 시점, 지시 형태, 대상문서의 종류 등을 종합하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① 만일 대주주·임원의 범죄사실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② 만일 자신의 범죄사실을 면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라면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5. 결론

이른바 삼성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단발성 위법행위가 아니라, 권력화한 자본이 국가 시스템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굴복시키고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발인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 역시 공정거래위원 뿐만 아니라 최고 수사기관의 수사마저도 무시함으로써 국가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행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가벼이 보지 마시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엄중히 수사하시길 요청드립니다.

## 참 고 자 료

1. 2008. 1. 16.자 한겨레신문
2. 2008. 1. 22.자 한겨레신문
3. 2008. 1. 22.자 한겨레신문(2)
4. 보도자료(2005, 9. 20. 공정거래위원회)

2008. 1. 23 .

위 고 발 인

참 여 연 대 (인)

공동대표 임 중 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

회장 백 승 현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